

#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9
----------	------

제출연월일: 2019. 7. 2.  
제출자: 중구청장

## 1. 개정이유

- 가. 2019. 7. 1.부터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 나. 종전의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기준을 인용한 우리구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장애등급→ 장애정도
- 나.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 4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라. 개정대상 조례
  - 1)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
  - 2) 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2조)
  - 3)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3조)
  - 4)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4조)
  - 5)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
  - 6)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6조)

##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4 (제217회-복지건설위제1차부록)

「장애인복지법」 제3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사항: 2019. 6. 18.~6. 21.(의견없음)

##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한다.

제1조(「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3조(「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를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4조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분의 50 경감

제6조제4항제4호 중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를 “에 따라 등록된”으로 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제6조(「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생략)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 <u>장애정도</u> ----- ----- --.

○ 「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 (사용료의 면제 및 경감 )</p> <p>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구컨벤션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p> <p>1. 2. (생략)</p> <p>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p> <p>4. 5. (생략)</p> <p>② ③ (생략)</p>	<p>제5조 (사용료의 면제 및 경감 )</p> <p>①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p> <p>4. 5. (현행과 같음)</p> <p>② ③ (현행과 같음)</p>

○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0조(이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u>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u>(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제6호에서 같다): 전액</p> <p>4. 5. (생략)</p> <p>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u>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u>: 50퍼센트</p> <p>7. (생략)</p>	<p>제20조(이용료 등의 감면) -----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장애정도가 심한</u> ----- ----- -----</p> <p>4. 5. (현행과 같음)</p> <p>6.----- -- <u>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u> ----- -----</p> <p>7. (현행과 같음)</p>

○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의2(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설치·운영) ① ~ ⑤ (생략)</p> <p>⑥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경감한다. 다만,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경감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p> <p>1. ~ 3. (생략)</p> <p>4.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 100분의 50 경감</p>	<p>제5조의2(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설치·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0분의 50 경감</p>
<p>제6조 (주차요금 등) ① ~ ③ (생략)</p> <p>④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 각호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p> <p>1. ~ 3. (생략)</p> <p>4.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p>	<p>제6조 (주차요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에 따라 등록된 -----</p>

<p><u>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u>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p> <p>5. ~ 10. (생략)</p> <p>⑤·⑥ (생략)</p>	<p>----- ----- ----- ----- ----- ----- ----- ----- ----- -----.</p> <p>5. ~ 10. (현행과 같음)</p> <p>⑤·⑥ (현행과 같음)</p>
--	--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6조(이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동차 이용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제1급부터 제6급까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p> <p>5.·6. (생략)</p>	<p>제6조(이용료의 면제)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p> <p>5.·6. (현행과 같음)</p>

○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100분의 30 감면</p> <p>가. (생략)</p> <p>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u>1급~3급 장애인</u></p> <p>다. ~ 자. (생략)</p> <p>3. (생략)</p>	<p>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u>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p> <p>다. ~ 자.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현행

별지 제1호 서식 후면

(뒷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 및 인하여 합니다.	
<b>I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b>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및 「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과 관련된 확인서류, 배정 및 요금납부를 위한 안내 서비스(전화, 문자, 우편 등), 통계자료 및 이력관리, 각종 민원처리 및 탈퇴요청에 의한 개인정보 삭제, 분할신청 서류 제출 확인 등 - 성명, 생년월일(나이),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아이디, 비밀번호, 차량정보, 장애항목, 유공항목, 노인맞이 돌봄, 승용차요일제 참여여부 등	
2. 동의하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하는 동안 보유 및 이용되며, 최원래 및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시에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됩니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 향후 계속 이용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없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을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단, 주차장 이용신청, 요금결제, 합의 등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합니다.	
<b>II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b>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및 「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제공, 정부기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체 고의만족도 조사제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기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청, 관련 고의만족도 조사 업무에 위탁받은 자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스템 관리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동 개인의 정보는 위 제공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보유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대상 정보 :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주소,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관련 등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원래자의 유지되는 동안 보유 및 이용	
<b>III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점 동의</b>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주차회비 신청 및 배정과 관련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행정정보를 담명자가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민원사무의 행정 :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 2. 대상 행정정보 : 주민등록본부,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증, 장애인증명서	
<b>IV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b>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거주자우선주차제 사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각 동의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법」 제42조의 외기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나이),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처리를 위한 관계서류 작성정 여부 확인 등	
※ 귀하의 상기 동의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서명 또는 인)	
신청인	
<b>◆ 작성요령</b>	
○ 「신청인」란의 「사업장주소」는 상시근무자가 신청할 경우만 작성합니다.	
○ 「권업일」은 현재 거주지에 전입된 일자로 기재합니다.	
○ 「신청자명」은 신청하시는 차량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며 「관계」란은 신청인과 소유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회사차량일 경우에는 제과자명 등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거지역명주소」는 해당지역에 표시된 번호를 기재하되 1차원 ~ 5차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요금 납부주기」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납부방법에 ○표 하시면 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란은 해당사항에 ○표 하시면 됩니다.	
○ 「현주소지 거주년수」는 주민등록상의 현주소지 거주기간을 기재하시면 되며, 기존주소지 거주기간은 비고란으로 기재합니다.	
○ 「승용차 요일제」란은 해당사항에 ○표 하고, 「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수 미취학 아동수」란은 주민등록상 75세이상 노인과 미취학 아동 수를 기재합니다.	

별표 2

		평가항목	점수	비고	
1순위 우선배정		국가유공자, 3급이상 중증 장애인 차량	-		
		대문상기출입구 및 차고지 앞 주차구획 설치차	-		
주차 거리		20m 미만	20	주소지 중심축에서 주차구획과의 직선거리	
		20m이상 ~ 50m 미만	16		
		50m 이상	12		
		1000cc 미만 승용차	13		
		1000cc ~ 1600cc 미만 승용차	10		
		1600cc ~ 2000cc 미만 승용차	9		
		2000cc ~ 3000cc 미만 승용차	8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제외
		3000cc 이상 승용차	6		
		9인승이하 소형승합, 1톤 이하 화물	7		
		10인승 이상 16인승 미만 승합	6		
2순위		30년이상 거주	30	주민등록상	
		25년이상 거주	27		
		20년이상 거주	24		
		15년이상 거주	22		
		10년이상 거주	21		
		10년미만	20		
		4 ~ 6급 장애인 차량	5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5		
		75세 이상 노인수, 미취학 아동수(주민등록상)	1인당 2점		
		3순위 상근자			미배정 구간 배정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후면

(뒷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 및 인하여 합니다.	
<b>I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b>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및 「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과 관련된 확인서류, 배정 및 요금납부를 위한 안내 서비스(전화, 문자, 우편 등), 통계자료 및 이력관리, 각종 민원처리 및 탈퇴요청에 의한 개인정보 삭제, 분할신청 서류 제출 확인 등 - 성명, 생년월일(나이),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아이디, 비밀번호, 차량정보, 장애항목, 유공항목, 노인맞이 돌봄, 승용차요일제 참여여부 등	
2. 동의하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하는 동안 보유 및 이용되며, 최원래 및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시에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됩니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 향후 계속 이용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없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을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단, 주차장 이용신청, 요금결제, 합의 등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합니다.	
<b>II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b>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및 「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제공, 정부기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체 고의만족도 조사제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기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청, 관련 고의만족도 조사 업무에 위탁받은 자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스템 관리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동 개인의 정보는 위 제공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보유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대상 정보 :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주소,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관련 등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원래자의 유지되는 동안 보유 및 이용	
<b>III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점 동의</b>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주차회비 신청 및 배정과 관련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행정정보를 담명자가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민원사무의 행정 :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 2. 대상 행정정보 : 주민등록본부,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증, 장애인증명서	
<b>IV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b>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거주자우선주차제 사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각 동의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법」 제42조의 외기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나이),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처리를 위한 관계서류 작성정 여부 확인 등	
※ 귀하의 상기 동의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서명 또는 인)	
신청인	
<b>◆ 작성요령</b>	
○ 「신청인」란의 「사업장주소」는 상시근무자가 신청할 경우만 작성합니다.	
○ 「권업일」은 현재 거주지에 전입된 일자로 기재합니다.	
○ 「신청자명」은 신청하시는 차량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며 「관계」란은 신청인과 소유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회사차량일 경우에는 제과자명 등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거지역명주소」는 해당지역에 표시된 번호를 기재하되 1차원 ~ 5차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요금 납부주기」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납부방법에 ○표 하시면 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란은 해당사항에 ○표 하시면 됩니다.	
○ 「현주소지 거주년수」는 주민등록상의 현주소지 거주기간을 기재하시면 되며, 기존주소지 거주기간은 비고란으로 기재합니다.	
○ 「승용차 요일제」란은 해당사항에 ○표 하고, 「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수 미취학 아동수」란은 주민등록상 75세이상 노인과 미취학 아동 수를 기재합니다.	

별표 2

		평가항목	점수	비고	
1순위 우선배정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량	-		
		대문상기출입구 및 차고지 앞 주차구획 설치차	-		
주차 거리		20m 미만	20	주소지 중심축에서 주차구획과의 직선거리	
		20m이상 ~ 50m 미만	16		
		50m 이상	12		
		1000cc 미만 승용차	13		
		1000cc ~ 1600cc 미만 승용차	10		
		1600cc ~ 2000cc 미만 승용차	9		
		2000cc ~ 3000cc 미만 승용차	8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제외
		3000cc 이상 승용차	6		
		9인승이하 소형승합, 1톤 이하 화물	7		
		10인승 이상 16인승 미만 승합	6		
2순위		30년이상 거주	30	주민등록상	
		25년이상 거주	27		
		20년이상 거주	24		
		15년이상 거주	22		
		10년이상 거주	21		
		10년미만	2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	5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5		
		75세 이상 노인수, 미취학 아동수(주민등록상)	1인당 2점		
		3순위 상근자			미배정 구간 배정

## 근 거 법 규

### 장애인복지법[시행일: 2019. 7. 1.]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

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